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스토킹방지법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 추가〉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6033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스토킹방지법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 추가	2

I. 개요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03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1. 29.

(3) 회 부 일 : 2024. 12.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도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와 심리치료·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정의 규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 조제1호허목).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스토킹방지법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제2조(정의)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호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 ----- ----- ----- ----- ----- ----- ----- ----- -----.
가. ~ 퍼. (생략)	가. ~ 퍼. (현행과 같음)

<u><신 설></u> <u>하.</u> (생 략) 2. ~ 7. (생 략)	<u>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u> <u>보호 등에 관한 법률」</u> <u>고.</u> (현행 허목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이란 제2조제1호에서 열거하는 각 법률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포함될 경우, 현행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²⁾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개정안은 현행법 정의 규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을 추가하여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의 혜택 및 규율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지정에 따른 혜택과 의무 >

	내용	관련 조항·지침
혜택	국고보조금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종사자 경력 인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
	공과금 감면 - 전기료 20%, 가스료(산업용 단가), 상수도료(30%)	전기료(전기공급약관_신고대상인 사회복지시설) 가스료(지자체별 도시가스공급규정) 전화요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법정기부금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소득세법」 제34조
의무	재무·회계규칙 준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보험가입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설 안전점검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후원금의 관리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최근 스톱킹 관련 경찰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상담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적정성과 투명성 등을 도모하기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율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혜택 제공을 통한 시설 활성화 및 공공성 제고, 피해자의 인권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스토킹 신고 현황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6월
경찰 신고(건)	4,515	14,509	29,565	31,824	14,919

※ 출처: 경찰청

< 스토킹 피해자 상담 건수 및 주거지원 등 >

(단위: 명, 건)

구분	긴급 상담	무료 법률구조	보호(명)		치료회복 프로그램	
			긴급 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인원	건수
'23년	2,155	47	68	12	359	916
'24. 6월	2,184	47	104	31	106	328

※ 출처: 여성가족부

- 다만,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시행일을 조정하거나 경과 조치를 통하여 기존의 시설들이 스토킹피해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스토킹방지법」은 최근에 제정(‘23.7월 시행)되어 법률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 안정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추가 여부 검토가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니 「스토킹방지법」에 근거한 지원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서 제반여건을 갖춘 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추가하는게 바람직함.

- (여성가족부: 수용) 개정안을 수용함.

문 의 처
02)6788-5497